

『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
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태근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
-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
-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,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, 소상공인 간 공생공존의 여건 조성

3. 주요내용

-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
 -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(안 제6조)
 -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(안 제7조)
 -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 (안 제8조)
 - 협의회의 업무 (안 제9조)
 - 협의회에 대한 지원 (안 제10조)

○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(안 제11조)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 시 고려사항 (안 제12조)

○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

-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(안 제13조)
- 조건 등의 부과 (안 제14조)
-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, 제7조, 제8조, 제13조의3
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
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

5. 검토의견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이 2010. 11. 24 개정 시행됨에 따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,

-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
-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, 소상공인 간 상생 공존의 여건조성으로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